

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8조(불법시설물의 철거) 및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(대집행의 절차)에 따라 검산동92-1번지 외 1필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유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6. 10. 1.~ 2026. 10. 15.(14일간)
2. 공고내용 :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
3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근거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8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
5. 공시송달 내역

행위자	불법점용 소재지	처분원인
미상	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92-1, 93-1번지 (구거, 농림축산식품부)	불법시설물 설치 및 폐기물 방치

6. 의견제출
 - 가. 제출기한 : 2026. 10. 15.(목) 18:00까지
 - 나. 제출방법 : 서면(의견제출서), 방문, 전화 등
 - 다. 제 출 처 :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(파주시농업기술센터) 농업정책과
7. 유의사항 :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8조(불법시설물의 철거)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(대집행과 그 비용징수)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(비용납부명령서) 및 제6조(비용징수)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8. 문 의 처 : 파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☎ 031-940-4590

2026년 10월

파 주 시

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파주시장 귀하

유의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